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 10. 1.(일)~10. 31.(화)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52척과 육상단속반(71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하여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책임자	과 장	김원배 (044-200-5560)
		담당자	사무관	최수연 (044-200-5563)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책임자	과 장	김형덕 (051-410-1006)
		담당자	주무관	이덕진 (051-410-1030)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책임자	과 장	손영우 (061-240-7903)
		담당자	주무관	박훈기 (061-240-7970)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책임자	과 장	태종완 (064-780-2421)
		담당자	주무관	김병수 (064-780-2422)



□ **추진 배경**

- 최근 국내 어선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어구(사용량·규격) 위반, 무면허·무허가 등의 고질적 불법어업은 지속 발생
 - * 단속현황: ('18) 1,679건 → ('19) 1,694 → ('20) 1,953 → ('21) 1,664 → ('22) 1,337 → ('23.上) 685
- '23년 가을철 성어기 해역별·업종별 불법어업이 예상됨에 따라,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기반 조성 추진

□ **주요 내용**

- (기간/주관) 2023. 10. 1 ~ 10. 31(1개월) / 해양수산부
 - * (참여)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중앙회 / (협조) 해경, 법무부
- (단속계획) 육·해상 합동단속반 편성·운영(국가·지자체 지도선 52여척 등)
 - * 어업관리단 및 관할 지자체와 교차 승선 실시
 - ** 수산자원보호관리선(373척) 참여를 통한 민간 자율감시감독 기능 강화 병행
- (단속대상)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금어기·금지체장, 어구·어법(공조조업 등), 허가제한 및 어선법 위반 등 집중 지도·단속 실시
 - (동해안) 살오징어 공조조업, 대게 포획행위 등
 - (서해안) 꽃게 불법포획, 어구초과 부설 등
 - (남해안) 새우 포획 무허가어업, 불법어구 사용 등
- (홍보계획) 합동단속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배부*
 - * 관할 지자체별 주요 항·포구 위판장 및 어촌계 등에 홍보 포스터 게시(1,550부)
 - ** 불법어업 예방 어업인 교육 및 조업어선 홍보방송(수협) 실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2023. 10. 1.~10. 31.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및 국내·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10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중점단속대상

- 공 통**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공조조업,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 동 해 안** 공조조업, 광력기준 위반, 128도 이동조업 등
- 서 해 안** 꽃게 불법포획, 어구초과 부설, 어구사용 제한 위반 등
- 남 해 안** 불법어구, 혼획위반, 무허가 등 불법조업 집중단속
- 외국어선**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위반
* 3대 중대 불법어업(무허가,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

단속기관

- 주 관** 해양수산부
- 참 여**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 협 조** 법무부, 해양경찰청

신고 및 문의

대표전화 : 국번 없이 1588-5119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www.mof.go.kr

지방자치단체 : 불법어업 지도·단속 담당부서

동·서·남해어업관리단 · 부산 051-410-1030-3

· 목포 061-240-7970-1

· 제주 064-780-2421-4

